

改正山林法解説④

義務造林 造林費納入으로 代替履行制度 마련

金 廷 柱 / 山林廳法務擔當官

〈전호에서 계속〉

第43條(造林命令等)

山林廳長은 山林資源의 造成을 爲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立木의 伐採 및 林產物의 利用·加工 販賣하는 者에 對하여 造林을 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造林命令를 받은 者가 山林廳長이 정하여 告示하는 造林費用을 山林開發基金에 納入한 때에는 그 造林義務를 履行한 것으로 보도록 義務의 代替 履行制度 導入.

從前에는 造林命令 받은 者는 造林이 아니고는 義務履行이 안되게 되어 있어 不便한 點을 考慮하여 造林費 納入으로 義務를履行하게 하는 代替履行制度를 導入함으로써 造林을 할 수 없는 形便에 있는 경우 便宜를 圖謀하는 한편 山林開發基金의 造成擴大에도 寄與하게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造林命令 받은 者는 命令대로 造林을 하거나 造林費用을 納付하거나 擇一하여 義務를 履行할 수 있도록 되었다.

山林開發基金에 納入된 造林費는 他目的으로 使用하지 말고 모두 造林에 使用되도록

록 制度化 되어야 할 것이다.

第45條(種·苗販賣業者の 登録)

-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山林用種子를 開發한 者는 그 品種을 山林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錄된 品種은 農林水產部令이 定하는 期間까지는 登錄한 者가 아니면 이를 生產하지 못한다.
- 登錄된 山林用種子를 販賣하는 種·苗販賣業者は 登錄된 品種의 山林用種子 외의 다른 品種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山林用種子開發 關聯規定 新設.

從前에는 種苗販賣業者の 登錄에 對한 規定만 있을 뿐 新品種 山林用種子를 開發한 者의 權益保護에 關한 規定은 없었다.

따라서 山林用種子를 開發한 者는 登錄하게 하고 一定한 期間까지는 登錄한 者가 아니면 이를 生產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特許制度와 類似하게 開發한 者를 保護하도록 하였으며 不良種子의流通을 防止하기 위하여 種·苗販賣事業者は 登錄된 品種이 아니면 販賣할 수 없도록 하였다.

第53條(林產物의 規格告示)

山林廳長이 山林行政上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林產物의 規格 또는 品質등을 定하여 告示한 林產物을 生産 또는 輸入하는 者는 山林廳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林產物의 品質表示를 하도록 訴設.

從前에는 林產物의 品質表示 義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던 것을 國民의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은 法定事項인 點을 參照하여 法으로 格上시켰고 特히 山林廳長이 規格 또는 品質등을 告示한 林產物을 輸入하는 者도 品質表示를 하게 함으로써 不良林產物의 輸入을 禁하도록 하였다.

第55條～第55條의2 (林產物의 加工業의 登錄)

- 製材施設등 林產物의 加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工業配置法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거나 同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林產物 加工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 林產物 加工業의 範囲 및 施設規模등은 農林水產部令으로 定한다.
- 林產物의 加工業을 登錄한 者(이하 “林產物加工業者”라 한다)가 林產物加工施設을 移轉·讓渡 또는 休業하거나 商號 또는 名義를 變更할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林產物加工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는 6月以内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停止를 命하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

에 위반한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林產物加工業의 停止處分에 위반하여 停止處分期間中에 林產物 加工業을 한 때.
 2. 이 法에 위반하여 伐採·掘取·採取한 林產物과 搬出한 林產物을 취득加工 또는 보관한 때.
 3. 林產物加工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4. 山林廳長이 告示한 林產物規格 외의 不良品을 加工·販賣한 때
 5. 市長·郡守의 命수에 위반한 때
- 市長·郡守는 林產物加工業의 登錄을 取消한 때에는 그 林產物加工業을 위하여 設置한 施設의 撤去를 命할 수 있다. 登錄81이 設置한 施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撤去를 命할 수 있는 施設의 범위는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고 林產物加工業 登錄規定 新設.

林產物加工產業이 活發하고 同製品 需要가 急增하고 있으나 加工業을 支援·育成할 수 있는 基礎資料 과악이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製材業등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林產物加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登錄도록 함으로서,

生產, 加工, 流通, 利用등 實態를 正確히 과악하여 林產物需給調節 및 加工業의 育成, 發展을 図謀코자 하는데 뜻이 있다. 다만, 工業配置法에 따라 工場登錄을 한 者는 登錄한 것으로 看做함으로서 二重登錄을 排除하였다. (다음호에 계속)